##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31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 박상혁 • 박용갑 • 이해식

채현일 • 한민수 • 이연희

정일영 • 박희승 • 박해철

박홍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철도사

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설치) ① 항공·철도사고등	의 설치)		
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			
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항공·철	<u>국무총리 소속으로</u>		
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u>&lt;삭 제&gt;</u>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			
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	②		
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u>국토교통부장관이</u> 위촉한다.	<u>국무총리가</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